금융위원회 **보도자료** 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. 12. 13.(수)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

회계제도 보완을 통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완화됩니다.

외부감사법 **시행령 국무회의** 통과(12.12일) 및
외부감사**규정 금융위 정례회의** 의결(12.13일)
➡ **12.19일**(잠정)부터 **동시 시행**

○ **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**에 대한 **연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시기**를 **5년간 유예**합니다.

○ 감사인 **직권지정** 사유 중 '**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**' **사유**를 **폐지**합니다.

○ 표준감사시간 **심의기구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.**

○ **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**가 **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**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**중립적인 조정기구**로 활동합니다.

- 부당행위를 한 지정감사인이 **조정 거부시 지정취소**(최대) -

금융위원회는 2023.12.12.(화) **국무회의**에서 「**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**」(이하 외부감사법) **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**되어 **공포일인 12월 19일(잠정)부터 시행될 예정**이라고 밝혔다. 또한, 동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난 9월 규정변경예고되었던 「**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**」(이하 외부감사규정)도 12.13.(수) **금융위원회 정례회의**에서 **의결**되어 개정시행령과 함께 **동시 시행**한다.

이번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**기업의 지정감사 부담 완화** 등을 위하여 **금년 6월 발표한 "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"**에 따른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고,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.

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의 **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를 5년 유예한다.

지난 3년여간의 **코로나19 상황**과 **최근의 경영환경 악화** 등으로 인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**구축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**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**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**에 대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**도입시기를 5년 연기**한다. 구체적으로는 **자산 5천억원 이상**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**'24년에서 '29년으로**, **자산 5천억원 미만** 상장회사는 **'25년에서 '30년으로**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. 참고로, **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**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**금년부터 도입**하였다.

둘째,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'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' 사유를 폐지하였다.

종전에는 기업이 '**투자주의환기종목**'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다. 그러나, '투자주의환기종목'은 **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**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**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**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시 **'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' 사유를 폐지**하였다. 다만, 직권지정사유로서 **"관리종목 지정"은 유지**되는 만큼 **투자자 보호**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 또한,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 **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되었더라도** 2024회계연도에 대한 **감사인 지정 효력이 상실**된다(부칙 제2조).

셋째,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*의 중립성을 강화한다.

* 기업계(5명), 회계업계(5명), 회계정보이용자(4명), 금감원(1명) 등 총 15명(공인회계사회 내)

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'**회계정보이용자**' 위원 규모를 **4명에서 3명으로 축소**(3명 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)하고, **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**한다. 이는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[9명=회계업계(5명) + 정보이용자(4명)]과 금감원 위원(1명)만으로 기업계(5명)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*하다는 **기업계의 우려를 반영**한 것이다.

*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2/3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넷째,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.

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**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**를 **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**(한국거래소, 이하 거래소)**로 일원화**하는 한편, 회계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(7인 이내)으로 구성된 「**지정감사인·회사 간 의견조정협의회**」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**사실관계 조사**와 **의견청취**를 통해 **자율합의안을 제시**하고,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**거부하는 경우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**할 수 있게 된다.

* (조정 프로세스(안)) ①신고접수(사실관계 확인) → ②1차 조정(실무차원 조정안 제시) → ③2차 조정(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) → ④(조정 불성립시) 금감원·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

다섯째, 거래소가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가치평가용역 수행을 지원한다.

그간 **소규모 상장사**(자산 1천억원 미만)의 경우 감사인이 **외부기관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**하는 것이 **과도한 부담**이 된다거나, 기업이 선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감사인이 **구체적 설명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**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.

이에 가치평가용역 수행의 **공정성 강화와 비용 절감**을 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**소규모 상장사**(자산 1천억원 미만)가 거래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 선정시 **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(Pool)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**하되, **감사인과 협의***를 거치도록 하였다.

* (선정 프로세스 예시) 피감기업이 용역특성,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內 3개사(잠정) 내외 선정 → 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 선정

※ 당초 규정변경예고시 **지정감사를 받는 소규모 상장사만**을 대상으로 하였으나, 이후 논의과정에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**소규모 상장사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**
(참고: '24년도 지정감사 대상 소규모 상장사 약 500개 → 소규모 상장사 전체 약 980개)

마지막으로,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**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** 위한 **다양한 제도가 개선되었다.**

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**자료제출을 요청**할 수 있는 **근거를 신설**하고, 회사가 **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**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**감리로 전환**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**감사인 지정 중**이라도 **회계부정위험이 높은 회사**의 경우 재무제표 **심사대상에 포함**하는 등 **심사제도를 보완**하였다. 아울러, 감리전환 사실의 **중복보고절차를 생략**하는 등 감리 관련 절차를 합리화하고,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**부과형평성을 제고**하였다.

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**개정시행령이 공포**되는 12월 19일(잠정)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.

※ (참고1) 6월 12일 발표된 「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」 제도개선 진행상황

❶ (**외부감사규정**) △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합리화, △지배·종속회사 지정감사인 일치 합리화 등 외부감사규정 개정완료('23.9월)

❷ (**한공회 내부규정**)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를 위한 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개정사항은 연내 시행 예정(12월 총회 의결 완료)

❸ (**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**)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등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연내 시행 예정(11.15.~12.5. 변경예고)

❹ (**법률개정사항**) △신규 중소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경감, △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, △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일원화 (별도 기준 감사의견 공시면제) 등은 법률개정안 마련·검토 중
→ '24년 22대 국회 원구성 직후 법안발의 추진

※ (참고2) 주요 용어 해설

- (**내부회계관리제도**)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두어야 하는 회계정보의 식별, 기록, 보고 등 재무보고에 대한 **내부통제 관련 규정 및 조직**
- (**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**) 지배력을 지닌 회사들까지 포함한 연결 실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**연결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**를 위한 **내부회계관리제도**
- (**재무제표 심사**) 회사의 **공시된 재무제표**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**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**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**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 종결**
- (**감리**)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**위반혐의**가 **고의 또는 중과실**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, **회계부정제보 접수** 등에 따라 실시

금융위원회 <총괄>	자본시장국 기업회계팀	책임자	과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세화 (02-2100-2693)
금융감독원	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신규종 (02-3145-7700)
		담당자	부국장	권영민 (02-3145-7720)
금융감독원	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	책임자	국 장	류태열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최창중 (02-3145-7301)
금융감독원	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석 (02-3145-7750)
		담당자	팀 장	김경률 (02-3145-7752)
한국거래소	코스닥시장본부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	책임자	본부장보	정상호 (02-3774-9502)
		담당자	센터장	서아론 (02-3774-929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